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38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의 아버지)

피 해 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피 신 청 인 ■■■(당시 □□□□초등학교 체육교사, 현재 □□□□□□□□
초등학교 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7~8명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인격권,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는,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연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을 피신청인이 무비판적으로 행했던 것이고, 피해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행해졌던 인사상 조치(수업배제, 연수취소, 전출 등)들은 이미 신분상 처분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 대신 피신청인이 인권교육을 받게 하도록 권고한다.

나. 교육청의 소속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 것을 권고한다.

다. 교사에 대한 인사상 조치는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최소·적절·적정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교사에 대한 인사상 조치에 대해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에게,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교사 연수 시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교사들에 대한 연수내용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〇〇〇〇초등학교장에게,

교사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체벌이 발생하였으므로,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7. 14.(화)

나. 신청인 : ○○○(피해자의 아버지)

다. 피해자 :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라. 피신청인 : ■■■(당시 □□□□초등학교 체육교사, 현재 □□□□
□□□□초등학교 교사)

마. 신청요지 : 2015. 5. 29.(금) 1교시, 3교시에 피신청인이,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체육 수업에서 제외하고, 체육수업시간 동안 피해자를 햇볕이 내리 쬐는 운동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게 했다.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2015. 5. 29.(금) 1교시 체육시간 수업을 시작하고 약 3~4분 정도 지난 다음에, 피신청인이 “의자 가져와서 앉아 있어라”고 말하여, 교실에 들어가서 의자를 가져왔다. 교실에서 의자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담임선생님이 “왜 의자를 가져가?”라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의자를 가지고 나왔다.

2) 예전에도 피신청인이, 8~9명의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의자에 앉혀 놓은 적이 있어서, “의자를 가져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있었다.

3) 2015. 5. 29.(금) 1교시는 체육, 2교시는 영어, 3교시는 체육 시간이었는데, 1교시 체육시간 내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의자를 교실로 들고 들어가 2교시 영어수업을 받았으며, 3교시 체육시간에 다시 의자를 들고 나와 앉아 있었다.

4) 의자를 가지고 와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천막 밖의 돌 근처에 앉아, 다른 학생들이 티볼¹⁾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의자 돌려서 앉아라”고 말하여, 다른 학생들이 티볼 경기하는 것을 구경하지 못하고 학교 정문 쪽을 보고 1,3교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5)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당시 그들이 없는 상태로 햇볕 아래에 있어 힘들었고, 날씨가 많이 더워 힘들었으며, 부끄럽고 창피했다. 피신청인에 대해 꺼려지고,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피신청인에게 좀 미운 감정이 있다.

6) 체육 시간의 규칙과 관련된 PPT파일 자료는 2015년 체육수업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보았고, 피신청인이 6학년에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7) 위 규칙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패널티를 준다는 규칙은, 글자가 있는 부분이어서 처음 수업시간에는 그냥 넘어가서 잘 몰랐고, 이후 체육 시간 수업할 때 마다 피신청인이 말로 조금씩 알려주었다.

1) T자 형의 막대기 위에 공을 놓고 방망이로 치는 종목으로, 야구와 비슷한 변형 스포츠.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2015. 2. 경에 체육전담교사 역량강화연수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연수를 받았다. 그 중 ●●● 선생님의 강의에서 체육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들었는데, 특히 ‘학교폭력 사안이나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출장 정지를 시키거나,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학생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이 되었다’는 내용에 공감하여, 이를 6학년 수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2) 학기 초 첫 번째 체육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에 대하여 안내했다. 안내한 내용은, ‘1학기 4월부터 6월까지 금요일 체육 시간과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티볼 리그를 진행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으며, 이런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운동장에 서서 대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초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주일간의 스포츠클럽 리그경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학생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티볼 리그에만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3) 피해 학생 이외의 학생들이 해당 규칙을 적용받은 받은 사례는,

[사례 1] 6학년 남학생들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한 학생에게, “너 이거나 처먹어라”고 폭언하고 따돌림을 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 가해학생들에게 규칙을 적용하여, 경기에서 제외하고 티볼 전술과 규칙을 공부하도록 했다.

[사례 2] 여학생들이 학생 한 명을 따돌려서(일명 ‘왕따’) 그 여학

생들을 티볼 리그에서 제외했는데, 이 학생들은 “티볼 규칙 및 전술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운동장에서 있게 했다.

[사례 3] 5월 초 쯤에는 이유 없이 친구를 때린 학생을 티볼 리그에서 제외시켰는데, 서 있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의자에 앉아 있게 했다. 이런 규칙을 적용받아 벌을 받은 학생들은 총 7~8명 정도 된다.

4) 위와 같은 규칙을 피해자에게도 적용하여, 2015. 5. 29.(금) 1교시와 3교시에 피해자를 티볼 리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도록 했으며,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5) 피해자를 천막이 아니라 햇볕이 내리 쬐는 운동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한 이유는, 천막은 티볼 경기를 한 학생들이 쉬는 공간이지, 벌칙을 받는 학생이 쉬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긴 팔 윗도리를 입고 있었는데, 특별히 덥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6) 피해자를 그늘이 없는 운동장에서 의자에 앉혀놓았을 때 피해자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특별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더울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7)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학교에 경찰관이 와서 알게 되었고, ○○○ 학생과 ○○○ 학생이 ‘피해자를 신고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담임 종결로 처리된 것은 알지 못하였다.

8) ㅁㅁㅁㅁㅁ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학생들과 학기 초에 정한 체육시간 규칙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그 규칙을 적용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신청인은 2015. 5. 29.(금) 1교시와 3교시 체육수업시간 2시간 동안,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였다.

2) 2015. 5. 29.(금)의 날씨는 맑았고, 전주 지역의 온도는 최고 섭씨 31도, 부안 지역의 최고 기온은 섭씨 28.4도였으며, 해당학교 운동장에는 티볼 리그 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 천막을 쳐두었다.

3) 피신청인은 2015학년도 위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고, 임의로 학교 폭력 사안의 가해학생들(6학년)에 대해 제재를 하는 체육시간 규칙을 만들었다. 그 규칙의 내용은 '스포츠클럽 리그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동장에서 경기 규칙 및 전술 공부를

한다.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로 되어있다.

4) 피해자가 관련된 학교폭력사안은, 2015. 5. 28.(목)에 담임 종결사안으로 처리가 되어 종료되었다.

5) 피신청인은 2015학년도에 위 규칙을 적용하여, 피해자 외에 7~8명의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있게 하거나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였다 (총 4회).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2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9조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3)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은 체육수업을 진행 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은 스포츠클럽 리그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경기 규칙 및 전술 공부를 한다.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위 규칙을 적용 하여 피해자 및 위 인정사실 5)항의 7~8명의 학생들에게,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동장에서 서 있게 하거나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게 하였다.

햇볕이 쬐는 운동장에서 서 있게 하거나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게 한 행위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지만, 주변 환경(햇볕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영향 및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체벌에 해당된다.

위 인정사실 2)항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경기를 위해 천막을 쳐놓 았으나 천막(그늘)에서 서 있게 하거나 앉아 있게 하지 않고 햇볕에 나가 있도록 한 점, 당시 온도가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해자 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체벌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비롯한 7~8명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과 야외 수업을 하면서,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벌을 준 것은, 해당 학생들이 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인정사실 5)항의 7~8명의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1)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은 2015. 5. 29.(금) 1교시와 3교시 체육수업 시간 2시간 동안,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체육 수업에서 배제하는 자의적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위 인정사실 5)항의 학생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하였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적절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3)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은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고,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의 담임교사가 아니므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관련 절차 및 조치 등과 관계없이, 임의로 위 인정사실 1)항 및 5)항과 같은 자의적 조치를 행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의 자의적 조치는, 이미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처리가 된 학생들에게 다시 징계를 받는 것과 유사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인정사실 5)항의 7~8 명의 학생들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6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위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규칙을 만들고 이를 위 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5. 2. 경에 체육전담교사 역량강화연수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연수를 받았는데, 그 중 ●●● 선생님의 강의에서, ‘체육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진행하고, 이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알게 되어 이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받았다는 연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진행하는데, 학교폭력 사안이나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하여 출장정지를 시키거나,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패널티를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과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이나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출장정지”는, 체육교사가 이미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학칙에 따라 징계 등을 받은 학생들에게, 자의적으로 다시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에 따른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담당 수업별로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피신청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학생은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매시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일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 관련

2015. 5. 29.(금) 피해자가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의자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던 피해자의 담임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운동장에서 공개적인 벌세우기가 4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동안 어떠한 교사(학교장 포함)도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러한 행위가 체벌에 해당하고, 공개적인 곳에서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임에도, 학교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반복적,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기타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7~8명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학습권,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신분상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2015. 2. 경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체육전담교사 역량강화연수에서 현장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던 내용을 일선학교 교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각급 학교에 전파하는 우수사례에 대해 사전에 인권침해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각급 학교에서 혼란 또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해당 반의 수업에서 배제되었고, ◆◆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따라 2015. 7. 21. 대상으로 선정된 전주대학교 영어심화연수 포기원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9. 1. 〇〇〇〇초등학교에서 〇〇〇〇초등학교로 전출되었다. 피신청인에게 행해진 위와 같은 인사상 조치²⁾들은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다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이 되거나 교권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기보다는, 인권교육 수강 등의 조치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 피신청인은 2015. 9. 24. 학생인권심의회위원회에 참석하여, 현재 본인이 받았던 인사상 조치에 대해서 소명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조치로서, 반강제적인 인사조치였고 징계와 같은 효과 또는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소속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교사에 대한 인사상 조치는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최소·적절·적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4.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별지]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